

치매공공후건사업

지원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 1899-9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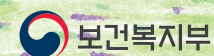
만일 치매에 걸렸는데...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나의 경제적, 법적 권리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치매공공후건사업이
홀로 계시는 치매어르신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치매공공후건 상담문의는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로!



치매공공후건 사업 안내



치매공공후건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
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관련 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등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
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
한 경우

성년후견제도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

치매공공후건사업 지원 사례

후건 사례 1

지역사회 거주 치매어르신

임대주택에 홀로 사시는 치매어르신입니다.

매달 어르신의 개인 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및 기초연금 등의 수익이 들어오나 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폐렴 등의 지병이 있어 정기적 병원 검진을 받아야하나 진료 예약 등의 절차를 혼자 진행 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건인 선임을 통해 어르신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 오는 수급비 등의 예금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매달 정기적 병원 검진을 예약해 적절한 진료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후건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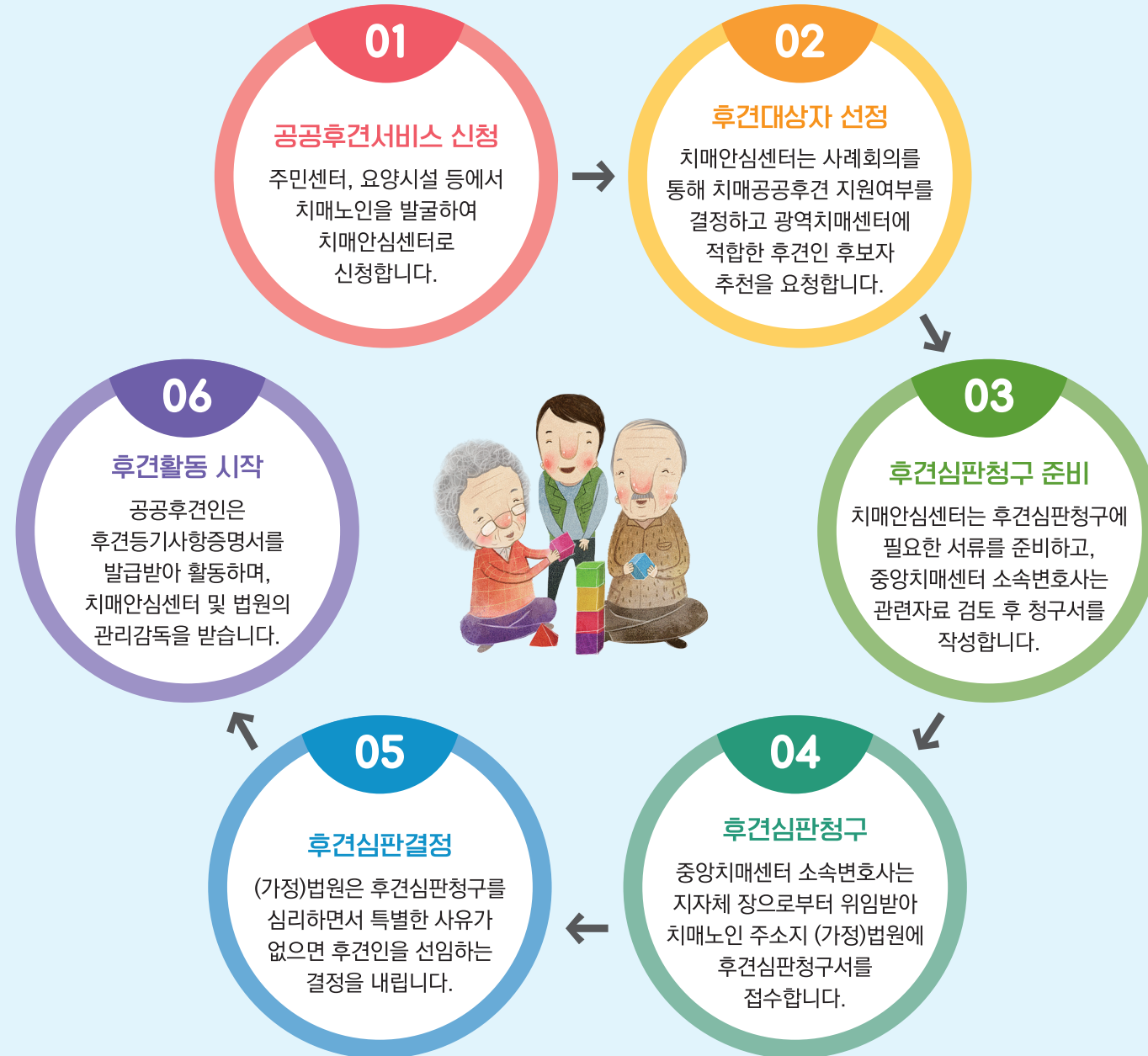
요양시설 입소 치매어르신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지내시는 치매어르신입니다.

시설에서 치매어르신에게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하고, 정기적인 시설입소비용 납부 등 지출관리에 대해 어르신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후건인 선임을 통해 입소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서비스를 요청하고, 기본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시설비용 납부와 필요한 일상 용품 구입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건서비스 이용 절차



공공후건인 Q&A

Q1 공공후건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르나, 보통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통장 등 재산관리
- 관공서 등 서류 발급
-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Q2 누가 공공후건인이 될 수 있나요?

• 공공후건인 자격

미성년자, 파산선고 받은 자, 형(刑) 집행 중인 자 등 민법 상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참조)가 없고, 후건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건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후건인 선정 절차

공공후건인 모집 및 관리는 광역치매센터에서 담당 하며,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시도 광역치매센터에 지역 내 후건인 후보자 모집 및 선발
- 2) 치매공공후건인 양성교육 수료 후 위촉장 수여
- 3) 치매안심센터에서 요청시, 후건대상자와 적합한 후건인 후보자 추천
- 4) 치매안심센터는 후건인 선정회의를 통해 후건인 결정
- 5) 후건심판청구 절차 진행